

3. 지원자격

전형구분		전형유형	지원자격	
정원내	일반전형	수능전형 실기전형	· 고등학교 졸업(2027년 2월 졸업예정)자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	
		학생부전형	· 고등학교 졸업(2027년 2월 졸업예정)자 또는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자	
	특별전형	성인학습자	· 만21세이상(2006.01.20. 이전 출생자) 출생자 중 원서접수일 현재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	
정원외	기회균형선발	농어촌 학생	I.유형 : 중학교(3년)+고교(3년) (지원자+부모) -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 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 포함)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시에 동 기간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	· 공통사항 - 농·어촌 지역 :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·면 지역 - 도서벽지 지역 :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도서벽지 지역 - 학교 재학 중 읍·면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 당해지역 농·어촌 인정 - 특수목적고(과학고, 외국어고, 국제고, 예술고, 체육계고) 및 검정고시 제외 ※ 본 대학에 합격하여 최종 등록한 자(I 유형은 부모 포함)가 최종 고교졸업일까지 해당지역에 재학(이수) 및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합격(입학)이 취소됨
			II.유형 : 초등(6년)+중학교(3년)+고교(3년) (지원자본인) -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에서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(예정 포함)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동시에 동 기간에 본인이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	
	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	·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 한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(본인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차상위 복지 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 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※ 수급 가구의 학생 → 주민등록표등본 內 같은 세대 구성원 ※ 차상위 복지 급여 수급 해당 가구 :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 부담 경감, 차상위 장애 수당,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, 차상위 자활 급여, 한부모 가정 지원		
		전문대학 이상졸업자	· 전문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또는 학사학위 취득(예정)자 · 기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- 4년제 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수료한 자 - 수업년한을 4년으로 하는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하고 70학점 이상 수료한 자 - 학점은행제 80학점 이상 취득자(학사학위과정에 한함) ※ 외국대학 출신자는 지원불가	
재외국민 및 외국인		·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교육재외국민 및 외국인(제2호), 북한이탈주민(제6호),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 재외국민, 외국인, 「국적법」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(결혼이주민)(제7호)에 해당하는 자 ※ 재외국민·외국인전형 모집요강은 입학홈페이지에서 별도 확인(별도 기간에 모집함) ※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(6호) 외국인 전담학과로 자율사항으로 모집하며, 선발학과 및 모집요강은 입학홈페이지 별도 확인		

※ 학교폭력 조치사항 8호(전학), 9호(퇴학처분) 지원불가(학교폭력 8호, 9호 해당자가 지원 시 불합격 처리되고 납부한 전형료는 환불되지 않음)

※ 검정고시 출신자,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전형,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하지 않음